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7,455,089	13,423,653
일반회계	378,569,296	11,357,079
특별회계	68,885,793	2,066,574
기타특별회계	68,885,793	2,066,574
상수도특별회계	11,228,778	336,86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78,619	20,359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52,803	64,58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77,028	20,311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18,751,107	562,53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01,000	12,030
청사건립특별회계	34,996,458	1,049,89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591,85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직무수행경비
3. 법정 의무부담금(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5.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 7 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